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3. 10 선고 2015가단533739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]

전 문

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3. 10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A는 29,153,763원 및 그 중 28,691,720원에 대하여 2014. 4. 29.부터 2015. 8. 31.까지 연 12%, 2015. 9. 1.부터 2015. 10. 27.까지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8,691,720원에 대하여 2014. 4. 29.부터 2015. 10. 28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민철

별지